

소득 발생에 대한 확인서

본인 _____은/는 현재 _____소득으로 간헐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증빙을 위한 서류(근로계약서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)제출이 어려워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1. 신청일(_____. _____. _____.) 이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은(_____)입니다.

2026. ____월 :

2026. ____월 :

2026. ____월 :

※ 1인 가구 중위소득 60% 1,538,543원, 2인 가구 중위소득 120% 5,039,150원,

3인 가구 중위소득 120% 6,430,843원, 4인 가구 중위소득 120% 7,793,686원

※ 청년층(18~34세)일 경우 가구원 **중위소득 120% 이하, 신청인 소득 60% 이하**여야 1유형으로 참여가능합니다.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**1유형**에 참여하여 소득 발생 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성실 신고할 것입니다.

-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 중 발생한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의 합이 월 935,208원 이상이면 월단위 지급액(월 50만원)에서 감액지급, 월 1,538,543원 이상일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정지(부지급)하고 지급한 것으로 봄(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)
-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횟수가 3회이상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, 취업 지원을 중단(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)

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으며,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에 의거
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: 2026. ____ . ____ .

작성자: (인)

신청인(확인자): (인)